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66

발의연월일: 2022. 9. 6.

발 의 자:신현영·강득구·강민정

고용진 • 김병기 • 김병욱

김승원 · 김정호 · 김주영

김회재 · 신정훈 · 위성곤

윤건영 • 이용우 • 이원택

이형석 • 장경태 • 정일영

천준호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·진료사업, 보건행정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, 해당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고도화 필요성이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코로나-19 등 감염병 대응 시 이용되는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환자의 관리 및 예방사 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, 해당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지 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).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

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.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"을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)①~3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 하여 활용할 수 있다.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
<신 설>	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(5)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・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(이하 "시·

<신 설>

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 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 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 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주민

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 한 다)에게 제공할 수 있다.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 ·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 • 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 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.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

・군수・구청장-----

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 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	\sim	5	(생	략)
Ι.		J.	(0	-

② ~ ⑧ (생 략)

•		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